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 선고 2021나532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 선고 2021나53243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. 28 선고 2020가단208847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광주광역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성

담당변호사 임정훈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혜원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서일석, 김혜인, 최윤희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온세계 담당변호사 김지훈

변론종결 2021. 10. 28.

판결선고 2021. 12. 2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가단208847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18. 12. 13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. 12. 14. 접수 제241879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6행의 [인정근거]란에 ‘갑 제13호증’을 추가하고,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8,000만 원이었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B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, 그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. 또한 피고는 B가 재력가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 받은 것일 뿐, B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등 B의 자력 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.

나. 판단

1) 무자력 주장에 관하여

살피건대, 갑 제6 내지 8, 1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약 8,000만 원 정도였던 사실 및 위 설정등기로 인하여 B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어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2)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하여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(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갑 제3 내지 6, 11, 12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,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위 추정을 반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- ① 피고는 B에게 6,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차용금증서(을 제1호증)를 제출하였는데, 위 증서 및 피고가 제출한 이체내역증(을 제2, 3호증)에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.
- ② 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증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.
- ㉠ 피고는 처음에는 본인 퇴직금 중 6,000만 원을 B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고가 계좌이체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, 4,000만 원은 모친인 C(B와 자매간이다)의 돈이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.
- ㉡ B는 피고의 이모로서,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B의 평소 재산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 위 차용금증서에 따르면 B는 피고에게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약 15개월 가량이 지난 2020. 3.경에서야 처음으로 B로부터 월 이자를 지급받았고, 이는 심지어 위 증서에 기재된 대여금만기일을 도과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증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였다거나 B에게 대여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
- ㉢ 또한 위와 같이 B가 피고에게 이자를 최초로 지급한 시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이고(이 사건 소장부분은 2020. 2. 19. 피고에게 송달되었다),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시점도 원고의 B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정도가 경과한 이후로서 역시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.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갑 제1호증)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. 12. 13.자 설정계약을 그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위 설정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(차용금증서는 2018. 11. 27.자로 작성된 것이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유석동, 판사 이보람, 판사 구성훈

별지